

	<h2>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6-6-1	
			제정일자	2017.05.01	
	개정일자				
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	3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사업단은 동양미래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(이하 “본 사업단”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사업단은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구로지역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 상점 및 거리 환경 개선 및 대학 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맞춤형 창업시스템을 통한 지역 활성화
2. 대학-주민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
3. 디자인 및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
4. 정보 공유를 통한 주거 안정화

제3조(소재) 본 사업단은 동양미래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구성) 본 사업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, 본 대학 산학협력단장의 지휘를 받는다.

1. 사업단장
2. 사업 수행위원
3. 직원 및 연구원

제5조(단장)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, 행정지원 인력을 지휘한다.

② 사업단장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본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된다.

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수행위원) 본 사업단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7조(직원 및 연구원) 본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둔다.

제 3 장 위 원 회

제8조(위원회)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구성과 임기) ① 본 위원회 및 위원은 단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캠퍼스타운사업단장, 산학협력단 부단장, 기획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본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는다.

제10조(임무)

1.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단 규칙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1조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.

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.

제12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제10조 3호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의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

제 4 장 재정 및 회계

제13조(세입) 본 사업단의 세입은 서울특별시 주관 캠퍼스타운사업에 관련된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제14조(세출) 본 사업단의 세출은 사업단 운영에 관련된 경상비,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에 의거한 지출 등 본 사업단의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.

제14조(예·결산) 사업단장은 운영계획(안)과 예산(안)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(내역)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회계) ① 본 사업단의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 내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사업단장이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한다.

② 본 사업단의 사업비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고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에

따라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.

③ 사업단장, 직원 및 기타 본 사업에 관련하여 활동하는 연구원들의 각종 수당, 임금, 출장비 등은 제②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진행된 회의나 기타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심의한 것으로 본다.